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
----------	----

제출년월일 : 1995.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관리 및 출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입, 관리토록 되어 있는 기금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하도록 함.
-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담당 회계관직변경 지침에 의거 도지사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 하되, 기금운용관은 내무국장이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계장이 하도록 함.

□ 붙임

1.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자치단체에'를 '충청북도에'로 한다.

제5조제1호중 '세입세출외현금구좌(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설치)에'를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영관은 내무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